

가가국민참여신당(국민참여신당) 당헌

제정: 2015.11.17.
개정 제1차: 2016. 1.29
개정 제2차: 2016. 2.17
개정 제3차: 2018년 12월8일
개정 제4차: 2024년 3월5일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조직과 운영)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제5조(권리와 의무)
제6조(당비)
제7조(여성당원, 청년당원, 노년당원, 장애인당원 등의 지위와 권리)
제8조(포상과 징계)

제3장 대의기구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제10조(권한)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제12조(대의원의 임기)
제13조(소집 및 운영)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지위와 구성)

제15조(권한)

제16조(운영위원의 임기)

제17조(소집 및 운영)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상임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제19조(권한)

제20조(소집 등)

제2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21조(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제22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제23조(최고위원의 수, 지위 및 권한)

제24조(최고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제3절 보조기구

제25조(사무처)

제5장 운영위원회 직속기구

제26조(당기위원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제28조(예산결산위원회)

제6장 고문단

제29조(고문)

제7장 상임위원회 보좌기구

제30조(전문위원회)

제31조(국민생활위원회)

제8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32조 (지위와 구성)

제33조(권한)

제34조(국회의원의 제명)

제35조(소집 및 운영)

제2절 원내대표

제36조(지위와 권한)

제37조(선출 및 임기)

제38조(원내대책회의)

제39조(실무기구)

제9장 정책연구소

제40조(정책연구소)

제10장 지방 조직

제41조(시도당의 지위와 승인)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42조(지위 및 구성)

제43조(권한)

제44조(소집)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45조(지위 및 구성)

제46조(권한)

제47조(소집)

제3절 시도당 상임위원회

제48조(지위 및 구성)

제49조(권한)

제50조(소집)

제4절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1조(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5절 시도당 집행기구를 위한 보조기관

제52조(사무처)

제53조(고문)

제54조(위원회)

제6절 지역당원협의회

제55조(지위와 구성)

제56조(지역당원)

제11장 공직선거

제1절 선거기구

제57조(선거기획단)

제58조(선거운동기구)

제2절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제59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제3절 후보자 추천 관련 기구

제60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61조(인재영입기구)

제4절 후보자 추천

제62조(추천기준)

제63조(시장및도지사 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제64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제65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제66조(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제67조(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제12장 재정

제68조(재정)

제69조(예산과 결산)

제13장 당헌 개정 등

- 제70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 제71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 제72조(당규의 제정 등)
- 제73조(당헌, 당규의 해석)

제14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

- 제74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제15장 보칙

- 제75조(의결정족수)
- 제76조(결의 방법)
- 제77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 제78조(기간의 기산일)
- 제79조(당원명부 등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 제80조(지역조직 운영 특례)
- 제81조(비상대책기구)

부칙

- 제1조(효력발생)
- 제2조(창당초기 당직자의 임기)
- 제3조(인재영입을 위한 비상조치)
- 제4조(창당초기 당대표 권한 특례)
- 제5조(창당초기 상임위원회 특례)
- 제6조(비상상임위원회)
- 제7조(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폐)

가가국민참여신당(국민참여신당) 당헌

제정: 2015.11.17.
개정 제1차: 2016. 1.29
개정 제2차: 2016. 2.17
개정 제3차: 2018.12.08.
개정 제4차: 2024.3.0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은 '가가국민참여신당(국민참여신당)'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가가국민참여신당의 목적은 국민 다수의 실질적인 행복의 보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치적 합의인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사회국가원리,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수정자본주의원리, 문화주의, 국제평화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남북 통일 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제3조(조직과 운영)

- ① 가가국민참여신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 ②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둔다.
- ③ 중앙당은 대의기관으로 전국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상임위원회, 최고위원회와 당대표(대표최고위원) 등을 두고, 지방조직으로서 시도당은 대의기관으로 시도당 대의원대회와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시도당 상임위원회와 시도당 위원장(시도당대표) 등을 둔다.
- ④ 가가국민참여신당은 조직을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운영한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 당원제를 둔다.
-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과 예비당원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통일한국당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③ 당원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비)

①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제5조 제①항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원은 우리 당 다른 당원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우리 당 다른 당원에게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된다.

제7조(여성당원, 청년당원, 노년당원, 장애인당원 등의 지위와 권리)

통일한국당은 여성, 청년, 노년, 장애인 당원 등의 정치활동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포상과 징계)

① 당의 생성, 유지와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외부인 및 외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은 징계할 수 있다.

③ 포상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구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2,000 명 이내로 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고문
4. 상임위원
5. 운영위원

6.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하위급의 장

7. 중앙당 각 위원회(급)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 당직자

8. 당 대표가 추천하고 상임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300명 이내

9. 중앙당 사무처장 및 사무직당직자

10. 시도당 위원장

11. 시도당 사무처장 및 상임위원

12. 시도당 운영위원

13.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각 시도당별 100명 이내

14. 시도당 법정 유급당직자

15. 당 소속 국회의원

16.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5명 이내

17.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지역위원장)

18.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역당원협의회가 인준한 대의원, 각 지역별 50명 이내

19. 우리 당의 당원인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또는 시도지사

20.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21.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22. 해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재외국민 대의원, 50명 이내

23. 직능대표자위원회가 추천하는 대의원, 200명 이내

24. 국민생활위원회가 추천하는 대의원, 각 위원회별 50명 이내

③ 전국대의원대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권한)

①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임기는 각 2년이다.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①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2년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선출 및 임기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대의원의 임기)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중 궐석이 있어 보충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통일한국당 당헌

제14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수임기구로서 대의기관이며,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해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300명 이내로 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고문
4. 상임위원

5.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하위급의 장
6. 중앙당 각 위원회(급)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 당직자
7. 당 대표가 추천하고 상임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50명 이내
8. 중앙당 사무처장 및 사무직당직자

9. 시도당 위원장
10. 시도당 사무처장 및 상임위원
11. 시도당 운영위원

12. 당 소속 국회의원
13.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이내
14.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위원장
15. 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당원협의회가 인준한 대의원, 각 지역별 10명 이내

16. 우리 당의 당원인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또는 시도지사
17.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8.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19. 해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재외국민 대의원, 10명 이내
20.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대의원, 20명 이내
21. 국민생활위원회가 추천하는 대의원, 각 위원회별 5명 이내

③ 제②항 각호와 관련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 의결
4.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6. 당 주요 집행기관 장의 인준
7. 운영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8.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9. 상임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10. 기타 당헌, 당규가 부여한 권한의 행사

제16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소집 및 운영)

- ① 운영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상하분기마다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상임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 ① 상임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기관이다.
- ②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100명 이내로 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하위급의 장
 4. 중앙당 각 위원회(급)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 당직자
 5. 당 대표가 추천하고 상임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10명 이내
 6. 시도당 위원장
 7. 시도당 사무처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전문위원회 각 위원장
 10. 국민생활위원회 각 위원장

통일한국당 당헌

③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제19조(권한)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 의결
3. 당헌 개정안의 발의
4. 당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5. 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6. 전국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7. 당기위원회가 의결한 상별안의 재심사 요구
8.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안과 결산의 심의, 의결
9. 시도당 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
10.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대의원대회의 승인
11. 전국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 의결
12.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13. 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14. 당무활동 보고 요구
15.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16.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② 상임위원회는 그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등)

- ① 상임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대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 ③ 고문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21조(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 ②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대표의 결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통일한국당 당헌

정한다.

제22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3. 당헌,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4.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5. 당 예산의 편성
 6. 상임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당헌, 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3조(최고위원의 수, 지위 및 권한)

- ① 최고위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 ②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최고위원은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 ③ 최고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2.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3.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 감독
 4.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5. 상임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6. 상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8. 시도당 또는 지역당원협의회에 대한 사고당 또는 사고지역 판정
 9.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4조(최고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① 최고위원회는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최고위원회는 대표최고위원인 당대표가 소집한다. 당대표가 소집하지 못하거나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득표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 ③ 최고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보조기구

제25조(사무처)

- ① 사무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당무처리를 보좌하는 기구다. 사무처 산하에 본부와 국실 등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사무처장은 당대표가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③ 사무처는 운영위원회에 직속하는 기구들, 당무협의회를 보좌하는 전문기구들, 국민들의 생활 중에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계층, 분야, 과제 등을 다루는 국민생활위원회의 업무와 호응하며, 협력, 지원해야 한다.
- ④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직속기구

제26조(당기위원회)

- ①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중앙당기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직속기관이며,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 ⑤ 시도당기위원회는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 ⑥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⑦ 당원과 당기위원회가 참고할 윤리기준을 당규로 정한다.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직속기관이며,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 ③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관련 2심 판정권을 가진다.
- ④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 내의 모든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며, 해당 시도당 선거 관련 1심 판정권을 가진다.
- 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 및 업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다.

제28조(예산결산위원회)

- ① 당의 수입과 지출, 예산과 결산을 심의 및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선출 및 업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고문단

제29조(고문)

- ① 당무에 관해 조언을 듣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당대표가 위촉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고문의 위촉기간은 당 대표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상임위원회 보좌기구

제30조(전문위원회)

- ①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책위원회
 2. 홍보위원회
 3. 대외협력위원회
 4. 직능대표자위원회
 5. 해외동포위원회
 6. 국제문제위원회
 7. 자유통일위원회
 8. 역사광정(匡正)위원회
 9. 4.3 및 5.18 위원회
 10. 권력형비리 조사위원회
 11. 인권위원회
 12. 문화종교위원회
 13. 당원교육위원회
 14.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15.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16. 재정위원회

17. 법무위원회

② 전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국민생활위원회)

① 국민 생활 중에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계층, 분야, 과제 등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국민생활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여성위원회

2. 청년위원회

3. 대학생 위원회

4. 노년위원회

5. 장애인위원회

6. 노동위원회

7. 농어민위원회

8. 소상공인위원회

9. 서민주택위원회

10. 일제강점기피해대책위원회

11. 관청피해 및 집단피해 대책위원회

12. 탈북자위원회

② 국민생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32조 (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운영위원회 직속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 의결

2. 입법관련 주요정책, 국회에 제출할 법안 및 국회에서 논의될 의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6.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34조(국회의원의 제명)

우리당 당원인 국회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한 징계절차 외에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5조(소집 및 운영)

- ① 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 ② 의원총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36조(지위와 권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제37조(선출 및 임기)

-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 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했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임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 ④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원내대책회의)

- ①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및 당대표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39조(실무기구)

- ① 원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 ②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정책연구소

제40조(정책연구소)

- ① 당의 이념과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연구, 당원 및 차세대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당과는 별도의 재단법인 형식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되 연구소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장 지방 조직

제41조(시도당의 지위와 승인)

- ① 시도당은 해당 지역 당원과 직능위원회를 통할한다. 또 시도당은 해당 지역 당원과 일반시민을 상대로 우리 당을 대표하고, 중앙당을 상대로 해당 지역의 당원과 직능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시도당이 우리 당에 소속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중앙당의 시도당 승인 또는 승인취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42조(지위 및 구성)

-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당원의 대의기구로서, 시도당 최고 의결기관이다.
-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제9조 제②항 전국대의원대회 구성원 중에서 해당 시도당 당원인 자로 구성한다.
- ③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제43조(권한)

-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통일한국당 당헌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3.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처리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소집)

- ① 정기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 ② 임시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도당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시도당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4.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45조(지위 및 구성)

-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며, 대의기구로서, 의결기관이다.
-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지역구국회의원
 3. 시도당의 사무처장 및 각 위원회(급)의 위원장(급)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6.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 시, 군 의회 의장단
 7. 시도당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하의 위원, 단 이 경우에 시도당 위원장이 중도에 퇴임하거나 혹은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제46조(권한)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 시도당당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그리고 당기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상별안의 확정
3. 제9조 제2항 제13호가 규정하고 있는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추천

4.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6.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7.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7조(소집)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시도당 상임위원회

제48조(지위 및 구성)

① 시도당 상임위원회는 시도당의 집행기구이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각 위원회(급)의 위원장(급)
3. 사무처장
4.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상임위원

② 시도당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제49조(권한)

시도당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 채택
5.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결정
6.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소집)

① 시도당 상임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기타 시도당상임위원회 소집 및 의사진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절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1조(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시도당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시도당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② 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시도당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시도당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시도당 상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제5절 시도당 집행기구를 위한 보조기관

제52조(사무처)

- ① 시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한 실무 기구로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 ② 시도당 사무처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시도당 위원장을 보좌한다.
- ③ 시도당 사무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④ 기타 시도당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당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53조(고문)

시도당 위원장이 당무처리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시도당 고문을 약간명 둘 수 있다. 시도당 고문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상임위원회의 조언을 들어 위촉한다.

제54조(위원회)

- ① 시도당에 시도당 전문위원회와 시도당 국민생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도당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당 상임위원회의 발의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② 시도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지역당원협의회

제55조(지위와 구성)

- ① 지역당원협의회에서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말한다.
- 지역당원협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당원들의 협의체이

다.

- ②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당원협의회를 둔다.
- ③ 지역위원장은 지역당원협의회를 통할하고 지역당원협의회를 대표한다.
- ④ 지역당원협의회에 지역당원들을 위한 대의기구로 지역대의원대회를, 그리고 집행기구로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 ⑤ 지역위원장 선출, 지역대의원대회의 구성과 운영, 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대의원대회 및 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지역당원)

- ① 지역당원협의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당원협의회에 소속된다.
- 단, 지역당원협의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시도당 에 소속된다.

제11장 공직선거

제1절 선거기구

제57조(선거기획단)

- ①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선거기획단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8조(선거운동기구)

- ① 각급 공직선거 시에는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제59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 ①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설치한다.
- ③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부분 외부 인사를 검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후보자 추천 관련 기구

제60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 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 ③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⑤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⑥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인재영입기구)

- 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후보자 추천

제62조(추천기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반적인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흠결이 없는 자
2. 애국심이 행위로 검증된 자
3. 전문성이 있는 자
4.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자
5. 적극적인 자

제63조(시장및도지사 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통일한국당 당헌

- ① 시장및도지사 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을 선정하고 경선에 붙이되, 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③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경선방법에 의한 경선 결과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후보자를 의결하고 상임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추천이 확정된다.
- ④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나 후보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 선거구 또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초하여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 ⑥ 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흠결이 없는 자
 2. 애국심이 행위로 검증된 자
 3. 전문성이 있는 자
 4.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자
 5. 적극적인 자
 6.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7. 당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자
 8. 당에 충성스런 자
- ③ 당대표는 비례대표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당대표는 후보자 중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
- ⑤ 비례대표 추천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5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 ① 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에 붙이되, 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 및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④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경선방법에 의한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⑤ 비례대표 추천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 ①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②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 ①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운영위원회의 순위선정 및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②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재정

제68조(재정)

- ① 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당비는 당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로 나눈다.
-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 대표가 정한다.
- ⑤ 기타 재정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9조(예산과 결산)

-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당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당헌 개정 등

제70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71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 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어려운지 여부는 상임위원회에서 판단, 의결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운영위원회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당규의 제정 등)

① 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 재적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②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73조(당헌, 당규의 해석)

당헌, 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제74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운영위원회가 판단, 의결한다.

② 당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 ③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④ 청산결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15장 보칙

제75조(의결정족수)

- ① 당의 각급 회의는 당헌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결의 방법)

- ① 대의기관의 결의와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 ②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77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8조(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79조(당원명부 등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 ①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문서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관리자는 당 대표 또는 시도당의 위원장이다.
- ②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경우에 관련 문서와 인장을 적법한 인수자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③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0조(지역조직 운영 특례) 시도당 창당 전까지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소속기관은 본 당헌에서 규정하는 시도당 및 그 소속기관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81조(비상대책기구)

- 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가 궐위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 ②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 ③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④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2015.11.17. 가가국민참여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이 당헌이 채택된 순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창당초기 당직자의 임기)

2015.11.17. 중앙당 창당대회 전에 창당된 5개 시도당의 대표, 공동대표 및 사무처장과 2015.11.17.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당 당대표 및 비상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모두 중앙당 창당일 기준 2년으로 한다.

제3조(인재영입을 위한 비상조치)

2015.11.17.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당헌에 의하면 당의 간부로서 당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 각종 위원회, 사무처 등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 중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먼저 선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의 영입을 위해서, 당대표와 소수의 상임위원만을 선출하고, 당분간 최고위원회를 공석으로 둔다

제4조(창당초기 당대표 권한 특례)

① 당 대표(최고위원)는 인재영입을 위해 공석 중인 최고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창당초기 상임위원회 특례)

① 우수한 인재의 영입을 위해서, 2015.11.17.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다수의 상임위원 직을 공석으로 두고, 소수의 상임위원만을 선출한다. 이 소수의 상임위원들을 비상상임위원이라고 칭하고, 이들 비상상임위원들의 모임은 비상상임위원회라고 칭한다.

통일한국당 당헌

② 비상상임위원회는 공석중인 상임위원직과 운영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 등이 구성될 때까지 그들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인재 영입 및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 각종 위원회 등의 구성은 비상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6조(비상상임위원회)

본 당헌에 따른 당의 각급 의결기관 및 실무 집행기관, 각종 위원회 등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당대표와 비상상임위원회가 그 모든 역할과 권한을 대행한다.

제7조(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폐)

① 비상상임위원회는 2015.11.17.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정치적 강령과 당헌의 기본정신 및 골격과 건전한 상식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령과 당헌을 변경하고, 당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최고위원회, 운영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 그리고 각종 위원회 등이 구성되는 순간 해당되는 역할과 권한은 자동 이양된다.